

제288회 임시회
2010. 3. 15.



전문위원 검토보고

○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위원회
전문위원

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0년 3월 2일
- 회부일자 : 2010년 3월 3일

3. 제안이유

- 식의약품분야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('09. 6. 11)에 따라 식약청 및 각 지방청에서 일부 수행하던 유통의약품 등 검정업무가 각 시도로 이관되어 '유통의약품 등 검사' 처리기간 항목을 신설하여 유통의약품 검사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별표의 「의약품 등 검사」란 다음에 「유통의약품 등 검사」란을 신설

시험종별	처리기간	시험용검체소요량
유통의약품 등 검사	단일성분제제 30일 복합성분제제 55일	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등(화장품 포함)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별표 기준에 준함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,

- 행정안전부의 식의약품 분야 특별행정기관 정비계획('09.6.)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행하던 유통의약품의 수거 및 검사업무가 시도로 이관('09.7.1.)됨에 따라,

※ 충청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 신설('09. 10. 1.)

-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별표의 「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」에 유통의약품에 대한 항목을 신설하여 이관된 유통의약품 검사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안전한 의약품을 공급하여 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,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 다만, 신설되는 항목 바로 앞에 있는 “의약품 등 검사” 처리기간은 15일에 불과한데, 신설되는 “유통의약품 등 검사” 처리기간은 성분에 따라 30일 또는 55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 :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